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04. 21(목),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정명섭(위원장 대행), 강보원(정안), 김봉렬,
이재인, 정은우, 홍승재 (이상 6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2차)	공개
2	완주 송광사 대웅전 주변 종무소 건립(3차)	공개
3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공개
4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시추조사	공개
5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건축물 조성(재심의)	공개
6	청도 석빙고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7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축	공개
8	경주 서악동 귀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9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선원요사 건립	공개
10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업무시설 신축	공개
11	예산 수덕사 대웅전 주변 계류정비	공개
12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교육연구시설 신축	공개
13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4	서울 숭례문 단청 복구 관련 현장실험 추진	공개
15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공개

【검토사항】

16	진주 축석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7	예천 야옹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공개
18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공개

【보고사항】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관정 설치
-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주변 송림사 담장 부분 보수
-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부지 조성
-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부지조성
-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주변 등산로 안전난간 설치
-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주변 단독주택 개축
- 안성 칠장사 해소국사비 주변 진입도로 포장
-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 여수 진남관 주변 교육연구시설(급식실) 증축
-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주변 진입도로 포장
-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주변 보광선원 신축(허가사항 2차 변경)
-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주변 공장 건립(허가사항 변경)
- 제천 청풍 한벽루 주변 케이블카 하부정차장 설치(허가사항 변경)
-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반가상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천 단월지구)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683-4번지, 2차)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683-5번지, 2차)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683-6번지, 2차)

19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4-001

1.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2차)

가. 제안사항

광주 동구 소재 보물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주변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5,6구역 “최고높이 40m, 10층 이상 개별심의”에 해당됨.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12.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 (2) 대상문화재 :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 소재지 : 광주 동구 지산2동 448-4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광주 동구 지산동 441-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00m

○ 사업내용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건립개요

구 분	1차 ('15.12)	금 회
사업 대지면적	36,010.6904m ²	28,773.4646m ²
개설기부 채납면적	3,264.72m ²	2,036.47m ²
건축면적	7,706.4855m ²	5,069.8268m ²
연면적	117,579.6408m ²	91,182.9924m ²
동수	공동주택 10동(811세대) 근린생활시설 1동	공동주택 11동(636세대)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층수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1~23층) 근생(지하2층, 지상10층)	공동주택(지하2층, 지상1~30층)
최고높이	101,2,9동(67.6m), 110동(59.2m), 103,4,5,6,7,8동(45.2m), 근생(34.8m)	105동(32.63m), 104동(48.93m), 110동(49.43m), 103,106동(49.47m) 111동(51.24m), 102,109동(63.43m) 108동(73.7m), 101동(82.2m), 107동(91.43m)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2.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 종무소 건립(3차)

가. 제안사항

전북 완주시 소재 보물 「완주 송광사 대응전」 주변에 종무소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종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임.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3.19) : 부결
 -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 ‘15년 문화재위원회 제4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5.04.16)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송광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완주 송광사 대응전
 - 소재지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6
 - 지정일 : 1996. 05. 29.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 내임

○ 사업내용 : 종무소 건립

구 분	1차 ('15.03)	2차 ('15.04)	금회
건축면적 (연면적)	95.91m ² (95.91m ²)	96.12m ² (96.12m ²)	79.38m ² (79.38m ²)
건축구조	한식목구조	좌동	좌동
지붕	팔작지붕	팔작(맞배)지붕	팔작지붕
층수 및 높이	1층, 7.4m	1층, 7.5m	1층, 7.3m
기타	기존 종무소 철거	좌동	기존 종무소 철거 한지체험관 철거 화단 선형축소 및 정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3.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템플스테이 건립

가. 제안사항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템플스테이를 건립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반야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 소재지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1-1
 - 지정일 : 2003. 03. 1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151-2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71m
 - 사업내용 : 템플스테이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149.40㎡(149.40㎡)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 1층 / 6.665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형변화 최소화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립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4.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시추조사

가. 제안사항

강원 양양군 소재 국보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에 시추조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시추조사를 하고자 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및 제2구역 “최고높이 평지붕 8m(2층) 이하, 경사지붕 12m(2층)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희송지오텍
- (2) 대상문화재 :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 소재지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100-2
 - 지정일 : 1966. 02. 28.
- (3) 신청내용
 - 사업명 : 철산화물기반 복합금속광상 확보를 위한 탐사기술 및 제철소 납품 가능 철광석 선광 공정 기술 개발
 - 사업위치 : 강원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 91 외 2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00m 내외

- 사업내용 : 시추조사(부지면적 317m², 시추공 규모 76mm, 총 3공 각 500m)

지번	지목	지적(m ²)	신청면적(m ²)	내 용	비고
91	전	1,663	49	시추작업부지(1, 2공)	2구역
93	전	936	115	시추작업부지(3공)	1구역
94	전	2,921	153	장비 진입로	1구역

- 사업목적 :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연구과제 일환으로 광체 및 자원조사를 위한 시초조사를 실시하여 광체 품위와 매장량 평가를 위한 광석시료 확인

라. 의결사항

- 부결
 - 진동 등으로 문화재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6명

5.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건축물 조성(재심의)

가. 제안사항

경북 김천시 소재 보물 「김천 직지사 대웅전」 주변에 황악산하야로비공원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 공원 건축물을 조성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제2구역 “경사지붕 7m 이하”, 제3구역 “경사지붕 12m 이하”에 해당됨.
- ※ ‘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3.07.18) : 조건부 가결
 - 시설물 분야는 개별심의토록 함
- ※ ‘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16.03.17)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천시장
- (2) 대상문화재 : 김천 직지사 대웅전
 - 소재지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
 - 지정일 : 2008. 09. 03.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92번지 일원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00m

○ 사업내용 :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건축물 조성

- 대지면적 : 143,695m²

- 건축면적(연면적) : 6,866.22m²(12,359.90m²)

· 세부내역

구분	허용기준	명칭	층수	최고 높이 (m)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 (m ²)	구조
1구역	원지형보존	평화의 탑	지상5층	43.4	1동	166.41/ 619.61	목구조
2구역	경사지붕 7m 이하	평화의 탑 전시관	지상1층 지하1층	6.72	1동	1,256.04/ 2,361.94	한식목구조 + 철근콘크리트
		문화박물관	지상2층 지하1층	12	1동	1,975.35/ 4,954.13	철근콘크리트 구조
		문화체험촌	지상1층	7.28	6동	559.71/ 559.71	한식목구조
		솔향다원	지상1층	5.48	3동	169.29/ 169.29	한식목구조
		안내센터	지상1층	5.01	1동	120.42/ 120.42	한식목구조
3구역	경사지붕 12m 이하	전통한옥촌	지상1층	5.45	19동	1,845.72/ 1,845.72	한식목구조
		단체숙박동	지상1층	5.82	4동	817.56/ 763.20	한식목구조
		건강문화원	지상1층 지하1층	5.76	1동	773.28/ 1,729.08	한식목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 현지조사의견(2016.03.29.)

- 박물관은 사찰에서 수림대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의 높이를 기준으로 시행하되, 유물의 성격과 크기 등을 고려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함.
- 목탑은 직지사 기록에 따라 5층으로 유지하되, 직지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규모를 축소하면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비례 및 조형을 조정토록 함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평화의 탑 및 전시관 등은 역사문화경관에 맞게 재조정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6명

6. 청도 석빙고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청도군 소재 보물 「청도 석빙고」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청도 석빙고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285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상리 45-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30m(청도읍성에서 20m)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45.8㎡(145.8㎡)
 - 건축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7.26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7.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주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창녕군 소재 보물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주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창녕군수
- (2) 대상문화재 : 창녕 술정리 서 삼층석탑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09-1
 - 지정일 : 1970. 06. 24.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374-4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185m
 - 사업내용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66.4㎡(166.4㎡)
 - 건축구조 : 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4.4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8. 경주 서악동 귀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경주시 소재 보물 「경주 서악동 귀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인
- (2) 대상문화재 : 경주 서악동 귀부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서악동 1006-1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경주시 서악동 963-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83m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99.96㎡(99.96㎡)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한식기와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6.03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9.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 선원요사 건립

가. 제안사항

경북 봉화군 소재 보물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주변에 선원요사를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선원요사를 건립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축서사 주지
- (2) 대상문화재 : 봉화 축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목조광배
 - 소 재 지 :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 739
 - 지 정 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7번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40m
 - 사업내용 : 선원요사 건립
 - 건축면적(연면적) : 94.79m²(94.79m²)
 - 구조 : 한식목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7.14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10.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 업무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보물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주변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업무시설(사무소)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5m, 경사지붕 최고높이 7.5m 이하”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2) 대상문화재 :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96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55, 656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에서 125m
 - 사업내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거창사무소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380.08㎡(711.76㎡)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층수 및 높이 : 지상2층 / 11.9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6명

11. 예산 수덕사 대응전 주변 계류정비

가. 제안사항

충남 예산군 소재 보물 「예산 수덕사 대응전」 주변에 계류를 정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계류를 정비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 문화재보호구역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산군수
- (2) 대상문화재 : 예산 수덕사 대응전
 -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2길 79
 - 지정일 : 1962. 12. 2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산4-1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 내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접함
 - 사업내용 : 재해예방을 위한 계류보전사업

공구별	구조물	규격	수량	비고
1지구	큰돌메쌓기	H=1m~20m, 좌안 323m, 우안 453m	1,220.48m ²	
	바닥막이	H=0.5m, B=3m~4m	5개소	
	큰돌골막이	상장 12m, 하장 9.5m, 유효고 1.2m	1개소	

공구별	구조물	규격	수량	비고
2-1지구	한식석축쌓기	H=2m~3.5m, 좌안 50m, 우안 64m	345.28m ²	
	바닥막이	H=0.5m~1m, B=4m~5m	7개소	
	수로암거	B=4m, H=3m	4m	
2-2지구	한식석축쌓기	H=2m~3.5m, 좌안60m, 우안12m	149.76m ²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보류 6명

12.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교육연구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충남 청양군 소재 보물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에 교육연구시설(중학교)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교육연구시설(중학교)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 “평지붕 최고높이 8m,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 이하” 및 제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리”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충청남도교육감
- (2) 대상문화재 :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 소재지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6-2
 - 지정일 : 1963. 01. 21.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205-2 외 33필지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보호구역에서 230m
 - 사업내용 : 기숙형중학교 신축
 - 대지면적 : 36,500m²
 - 건축면적(연면적) : 4,533.88m²(9,920.42m²)
 -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 층수 및 높이 : 지하1층, 지상3층 / 13.05m
- 절·성토 : +3m ~ +3.8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보류 6명

13.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북 군위군 소재 보물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가 문화재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기준 범위 내 재·건축 허용”에 해당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군위 대율리 석조여래입상
 - 소재지 : 경북 군위군 북계면 대율리 691
 - 지정일 : 1989. 04. 10.
- (3) 신청내용
 - 사업위치 : 경북 군위군 북계면 대율리 705-2
 - 문화재와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과 접함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648㎡
 - 건축면적(연면적) : 80.06㎡(80.06㎡)
 - 구조 : 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 층수 및 높이 : 지상1층 / 5m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경관 저해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4명, 조건부가결 1명, 보류 1명

14. 서울 숭례문 단청 복구 관련 현장실험 추진

가. 제안사항

서울 중구 소재 국보 「서울 숭례문」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단청공사 지침 마련을 위한 전통 단청기법 안정성 검증과 관련한 현장실험(옥외폭로시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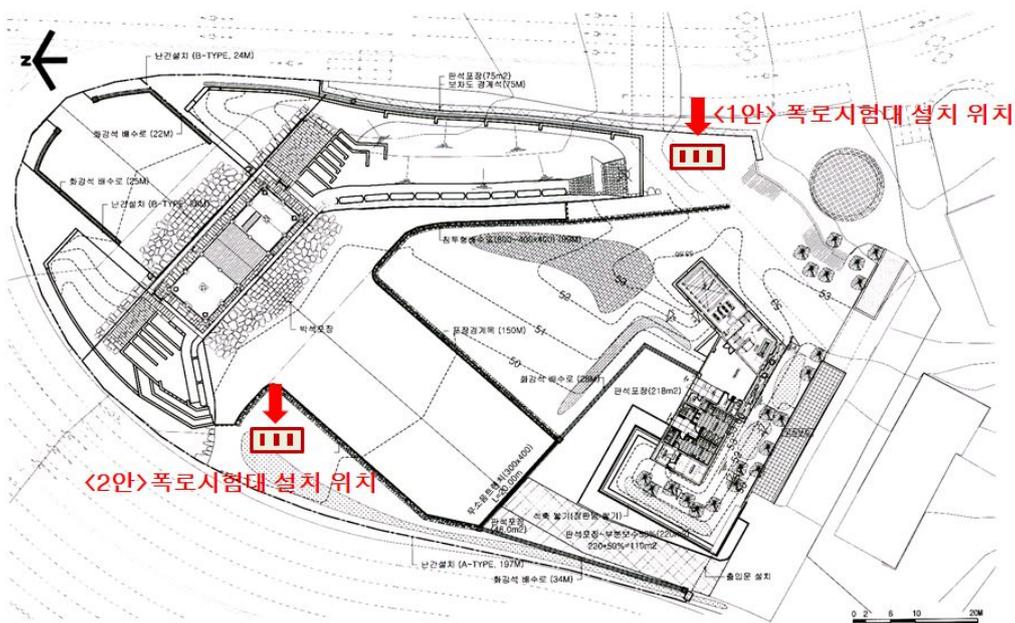
- 숭례문 단청 복구용 안료 및 시공지침 수립을 위한 기준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현장실험(옥외폭로시험) 계획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문화재연구소장(복원기술연구실)
- (2) 대상문화재 : 서울 숭례문
 - 소재지 :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 지정일 : 1962. 12. 20.
- (3) 심의내용 : 숭례문 복구용 단청기법 관련 현장실험 추진 및 실험용 구조물 설치
 - 전통 단청기법 관련 현장실험 추진(안)
 - 실험기간 : 2016. 5. ~ 2018. 12월(총 32개월)
 - 실험내용 :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옥외폭로시험(※ 촉진내후성시험 병행)
 - 평가대상 : 전통 단청기법 채색시편(총 280~360개/ 10종 색상/ 2종 기법)
 - 실험장소 : 숭례문 보호구역 내 허가지점(면적 30m² 규모)
 - 주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문화대학교
 - ※ 상기 실험기간은 결과 보완 및 추가 실험을 포함한 기간임.

○ 실험용 구조물 설치(안)

- 구조물 종류 : 옥외폭로시험대(2~3대), 기상관측기(1대)
 폭로시험대 보호용 구조물(1대/ 4m×7m×2m(H))
- 설치기간 : 2016. 5월 중 완료 예정
- 설치면적 : 약 30m²
- 설치위치 : 동측성곽 우측 공간(1안) 또는 광장 서측 조경지(2안)
- 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 옥외폭로시험 관련 규격(일조량 등), 소요면적(30m²)을 만족하는 지점
 - 승례문과 유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인접 지점
 - 실험편의 보호·관리가 용이한 지점으로 보호용 펜스 안쪽 공간 필요



<승례문 현장 옥외폭로시험 구조물 설치 위치(안)>

(4) 추진경과

- 국내·외 시판 천연안료 시장현황 조사 및 분석(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6~12월)
- 시판 천연안료의 품질현황 분석 및 성능평가(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1~12월)
- 전통 단청기법 조사 및 시공법 연구(전통문화대학교, 2014. 6.~추진 중)
 - 전통 단청기법(2종)에 대한 10종 색상별 시공기준 도출(단기평가 결과임)
-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현장평가 계획수립(국립문화재연구소, 2016. 1~3월)

라.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

- 금번 전통 단청기법에 대한 현장실험은 문화재청(수리기술과)의 요청에 따라 송례문에 적용할 단청기법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험으로 가능한 문화재 경관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할 계획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1안으로 함이 타당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조건부가결 6명

15.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정하고자 허용기준 조정(안)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하여 심의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2015년 건축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2015.06.18)에서 조건부가결(도 조례에 의해 허용기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하부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구역으로 설정)된 사항으로, 예고기간('16.03.10~'16.03.29) 동안 별도 의견 없었음.

다. 주요내용

(1)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청도군)에서 도시계획지구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제외 요청

(2) 조정 대상 문화재(1개)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및 사유
1	보물	113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주거, 상업, 공업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제외

(3) 향후 계획

- 건축분과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관보에 고시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첨부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내용

[첨부]

청도 봉기리 삼층석탑

가. 문화재 개요

- 지정 별 : 보물 제113호
- 소재지 :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719-5번지
- 지정 일 : 1963. 01. 21.

나. 검토의견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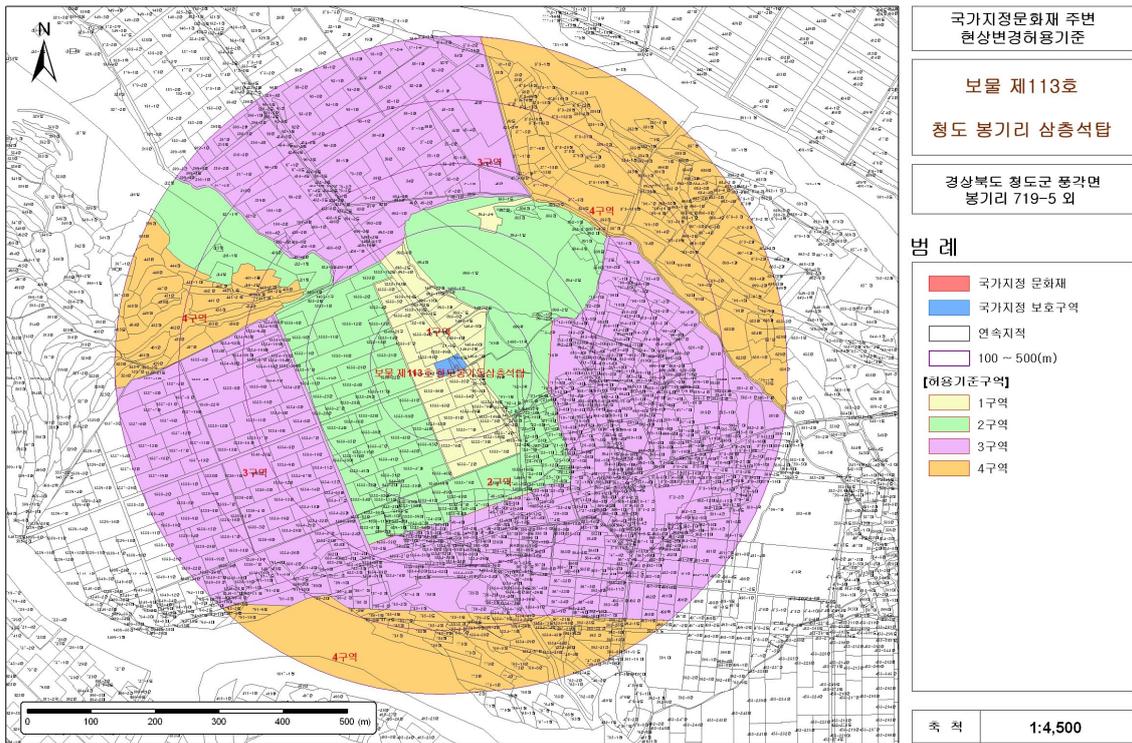
【 당 초 】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주거시설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주거, 상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변 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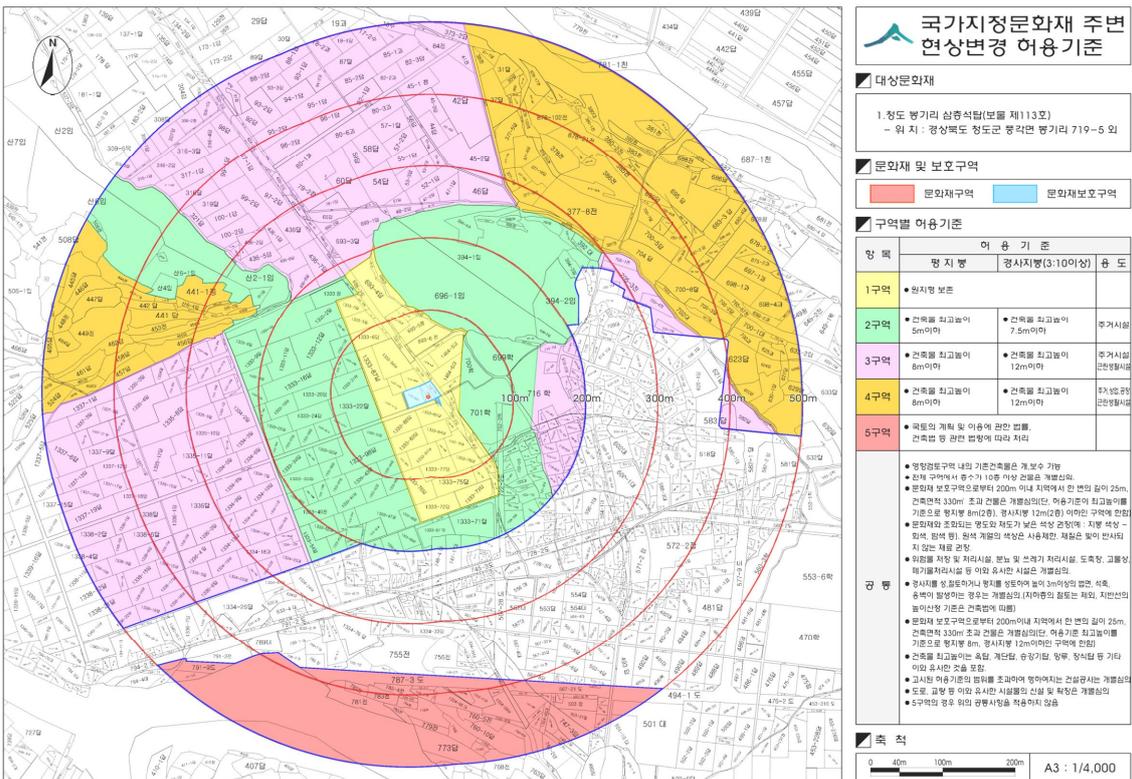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주거시설
제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제4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주거, 상업, 공장, 근린생활시설
제5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5구역의 경우 위의 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당 초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변 경 】



※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검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4-016

16. 진주 축석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진주시 소재 「진주 축석루」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진주 축석루」를 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남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 「진주 축석루」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 지정일 : 1983. 07. 20.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칭 : 진주 축석루(晉州 矗石樓)
 - 소유자(관리자) : 국유(진주시)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 조성연대 : 1241년(創建), 1960년(再建)
 - 지정면적 : 508.6㎡
 - 양식 : 목구조, 팔작지붕, 다포양식

라. 현지조사의견(2014.08.28.)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미흡.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부결
 - 재현으로 인한 역사적 가치 훼손에 따른 지정가치 미흡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부결 6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4.08.28	대상문화재	진주 축석루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 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진주성 축석루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0월 28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 환경

진주시의 가운데쯤에서 동서로 태극형을 이루며 흐르는 남강은 진주시를 남북으로 나눈다. 그 남북을 이어주는 진주교 서측에 사적으로 지정된 진주성이 자리하고, 진주성 남측 남강변의 절벽 위에 축석루가 있다. 따라서 원래는 진주성의 군사적 기능의 남장대이나, 평소에는 풍류를 즐기는 누각이기도 하다. 진주성 내에는 임진왜란 때 많은 순결자가 발생한 호국성지로서, 김시민 장군 전공비 및 논개사당 등의 역사 기록이 있다. 또한 남강의 의암 및 국립진주박물관이 있어 역사 교육장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축석루 앞 남강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더욱 축석루를 부각시키고 있다. 진주성과 남강이 잘 관리되고 있어 축석루도 좋은 환경에서 사회·역사 교육자료 및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④ 연역, 유래 및 특징

축석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 중층누각형 팔작기와 지붕의 익공양식 건물이다. 진주성의 남장대로서 남강 절벽에 접해 있으며, 축석루 주변에 담장을 둘러서 독립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고려중기에 창건(1241)한 이후 중수와 중건을 거듭하고, 1618년 복구된 축석루는 1948년에 국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한국동란으로 소실되면서 국보자격이 해제되었다. 1960년에 어렵게 복원 중건되었다. 고문헌에 의하면, 임진왜란 이전의 축석루 좌우에는 쌍청당과 임경헌이 있었고, 그 좌우로 함옥헌과 청심헌이 연결되어서 축석루의 당당한 위용과 권위성을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부속건물이 모두 없다. 그리고 한국동란 이전의 축석루 사진에는 누하지반이 경사진 자연지반에 목조기둥이었으나, 지금은 수평지반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하고 돌기둥으로 되어 견고하고 안전구조로 되어있다.

⑤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1950년 이전의 사진자료에는 축석루 누하지반의 경사진 자연암반에 목조기둥 사용했다. 현재는 누하지반이 수평으로 조성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박석을 깔고 돌기둥을 세웠다. 따라서 축석루 뒷면의 지반이 낮아짐에 7단의 돌계단 위에 5단의 목조계단을 설치하여 축석루상에 오르게 했다.

정면 5칸, 측면 4칸(21.15m×11.10m)의 평면구성에서 누상의 중간의 종도리 방향 기둥 4개를 생략하고 정면 평주에서 배면 평주까지 직선재에 가까운 긴 대들

보(춤 740cm×길이 13m) 4개를 가구된 것은 보기 드문 예이다. 따라서 정면과 배면에는 퇴보가 필요없게 되었다. 누하기둥은 석재이고, 누상은 목조의 원기둥 민흘림으로 하고, 창방은 너비보다 높이를 조금 높게 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마무리 하였기에 시각상 가늘게 느낀다. 창방의 뿔목은 장식없이 절단하였다.

7량구조에 외목도리를 갖추고 모든 도리는 굴도리로 했다. 우주에서 외목도리의 뿔목은 그대로 절단하여 내밀고 장여는 초각하여 귀포와 어울리게 장식하였다. 양측면은 뒷간으로 하고 충량을 걸었다. 충량중간에서 도리를 받는 동자주를 세우고 볼트로 보강했다. 지붕은 처마꼭 없이 직선이고 선자연 시작부터 양곡을 주었으며, 물매는 급한 편이다. 포작은 1출목 3익공으로 구성하였고 쇠서가 발달하지 못한 짧은 살미에 첨차는 운공처리 되어있다. 계자난간이 설치된 뒷마루 넓이까지 합치면 270㎡가 넘는(80평 규모) 평면의 축석루에는 벽이나 창호가 설치되지 않아 주위 풍광을 만끽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축석루는 여러 번 중수 중건을 거듭하였고, 1960년에 복원된 현존건물은 50년 이상 되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진주성 내에서 진주성 및 축석루와 관련된 우리의 역사 및 관련 인물들의 사료가 풍부하여, 역사 현장 교육장으로 크게 활용 및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축석루 본연의 형식과 특징이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구조계획, 용적과 도구 및 부재 조형미 등의 축석루 자체의 전통성 및 목조건축기법의 전통성 확인과 고증연구도 필요로 한다.

어려운 시기에 기적적으로 복원된 현 축석루는 단순한 구조형식 선택과 의장의 예술적 표현이 미약하며, 전통기술기법 표현이 불확실한 점 등으로 지금은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만족치 못한다고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4.08.28	대상문화재	진주 축석루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 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진주 축석루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년 12 월 일

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축석루¹⁾는 진주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남강(南江)변에 자리 잡고 있는 진주성(晋州城)²⁾내에서 경치가 가장 뛰어난 동남쪽 돌벼랑 위에 남향으로 앉아 있다. 바로 앞에는 강이 굽이쳐 흐르고 그 너머로는 진주시가지가 바라보이며, 더 멀리로는 산들이 바라보인다. 축석루의 이름은 ‘강 가운데 뽕죽하게 돌이 솟아 있다’하여 부쳐졌다고 한다.

축석루는 진주성을 대표하는 누각이면서 장대(將臺) 건물로, 전시에는 지휘소로 사용하였으며, 평상시에는 유흥상경의 장소로 쓰인 건물이다. 현재와는 달리 임진왜란 전까지 축석루의 동쪽에는 동각(東閣)인 함옥헌(涵玉軒)과 청심헌(淸心軒), 서쪽에는 서각(西閣)인 쌍청당(雙淸堂)과 임경헌(臨景軒)이란 부속 건물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진주성의 동쪽 축석문을 들어서면 오른쪽과 뒤편에 담장을 두르고 오른쪽 담장에 시설한 출입 삼문이 보인다. 왼쪽 조금 높은 곳에는 의기사³⁾로 드나드는 사주문을 낸 담장이 있고, 누하의 강 쪽에는 성벽의 여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쪽 성벽 중앙부의 아래에 강으로 통하는 문을 따라 내려가면 의암⁴⁾이 바라보이고 그 위쪽에 의암사적비 비각이 놓여 있다. 의기사 우측으로는 쌍충사사적비가 있고, 뒤편 도로 너머에는 임진대첩계사순의단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외에도 진주성 내에는 김시민장군 전공비·호국의 종·축석정충단비·영남포정사·북장대·서장대·포루·창렬사·호국사·국립진주박물관 등이 진주시 역사문화환경의 핵심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④ **연혁·유래 및 특징** : 축석루는 진주목사 김지대(金之岱, 1190~1266)가 1241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창건 이후에 진주목사 안진(安震, 1293~1360)이 1322년에 중수하였으며, 1379년에 왜구의 노략질로 인해 소실되었다. 소실된 것을 태종 13년(1413)에 진주판목사 권충(權衷, 1352~1423)이 판관 박시결(朴時潔)과 중건하였다. 이후 10차례(1491, 1583, 1618, 1693, 1724, 1786, 1810, 1886, 1908, 1949)의 중수가 이루어지면서 잘 지켜오다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소되

1)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1983년 지정)

2) 사적 제118호, 고려말 우왕5년(1379)에 진주목사 김중광(金中光)이 잦은 왜구의 침범에 대비하여 본래 토성이던 것을 지금의 석성으로 다시 쌓았음.

3)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7호, 임진왜란 당시(1593년) 왜장을 꺾이고 남강에 투신하여 순절한 논개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영조16년(1740)에 경상우병사 남덕하가 창건 세운 사당으로 지금의 모습은 의기창렬회가 시민의 성금을 모아 재건한 것임.

4) 경상남도 기념물 제235호, 위험한 바위라 하여 위암이라 불리다가 논개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하여 의암이라 부르게 되었음.

었다. 1956년 진주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중건이 추진되었고, 1957년 국무회의에서 ‘진주축석루보수관계보고’의 건으로 보고되어 1960년에 준공하였다. 소실 이전인 1948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나 1957년 해제되고 1983년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장방형 중층 누각이다. 주간은 정면의 정칸을 좌·우의 협·퇴칸보다 조금 넓게 하고, 측면은 중앙부 두 칸을 양 단부 퇴칸보다 조금 크게 잡았다. 누 하부에는 내·외진주를 모두 세우고, 누 상부는 가운데에 내진주를 두지 않고 넓은 마루공간이 되게 했다. 누상부는 사방으로 계자각 현합이 둘러져 있고 사방이 개방되어 있다. 배면 정칸과 양측 텃간의 세 곳에는 아래는 화강석, 위는 목재로 만든 오르내리는 계단을 두었다.

기단은 원래 설치하지 않고 암반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중건하면서 누하부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편평하게 조성하고 기단을 설치하였다. 기단 가장자리는 화강암 장대석으로 둘러져 있고 그 주위로는 배수구가 시설되어 있다. 초석은 화강석 원형 정평 주초이다. 기둥은 누하부에는 화강암 원주를, 누상부에는 목재 원주를 세웠다. 누상의 외진주는 평주이고, 내진주는 고주이다. 누하주는 원래 나무 기둥이던 것을 중건 때 돌기둥으로 바꾸었다.

공포는 외1출목 3익공 양식으로 주심첨차는 마구리를 운궁형으로 초각하고, 외목첨차는 연화두형으로 초각하였다. 살미는 모두 양서형으로 맨 아래는 마구리를 세모고개로 사절하고 그 윗면은 연화로, 위쪽 두 살미는 연화로 조식되어 있다. 귀포도 주심포처럼 연화·연봉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기둥 사이에 놓인 화반은 화반초가 새겨져 있고 그 위쪽에 소로 세 개가 놓여 있다. 익공공포의 주심첨차 운궁형 초각과 연화 살미 촛가지 등은 아주 후기적 모습으로 1960년 준공 당시 기준으로 삼았다는 18세기 중반까지 올려 보기 어렵다. 이는 밀양 영남루·삼척 죽서루·남원 광한루⁵⁾ 등의 누각 건물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상부가구는 2고주 7량가이다. 내진고주를 세워 대량을 걸고, 양측면에는 총량을 걸었다. 대량 위에는 익공을 둔 동자주가 종량을 받고, 종량 위에는 파련대공이 종도리를 지지하고 있다. 내진고주 익공과 행공의 연봉과 연밥, 파련대공의 초각 장식도 공포의 살미처럼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모습이다. 총량은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곡재를 사용하지 않고 주두 위의 익공과 행공 위에 얹고 대량

5) 밀양 영남루(보물 제147호) : 1884년 중건, 1출목 3익공, 삼척 죽서루(보물 제213호) : 조선 전기, 주심포계 초익공. 남원 광한루(보물 제281호) : 1626년 재건, 1출목 2익공.

에 걸쳤다. 좌·우측 층량 위에는 동자형동자주가 외기틀을 받고 있다. 층량과 동자주는 볼트 너트로 결합하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수법이다. 천장은 양측면의 대량과 외기도리 사이에 설치한 좁은 우물반자 눈썹 천장이외는 모두 연등천장이다. 네 귀의 추녀 좌우는 선자연으로 꾸몄다.

옥개부는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지붕마루에 양성을 바르고 박공널마다 7개 목기연에 까치발처럼 초엽으로 장식하였다. 양성과 목기연 초엽은 누각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과도한 장식으로 이 역시도 아주 후기적 모습이다.

단청은 비교적 화려한 열금단청으로 시채하였다.

⑤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축석루는 1960년 준공 당시 1700년대 중반 중수한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나 지금의 건물 양식은 18세기까지 올려 보기 어렵다. 또한 소실이전인 1920년대 조선고적도보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단부와 누하주 등의 변경 이외에도 누상부의 공포를 비롯한 여러 곳이 달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축석루는 진주시 역사문화환경의 핵심적 문화유산으로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높지만 건축적인 측면에서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4.08.28	대상문화재	진주 축석루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② 문화재 명칭	진주 축석루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지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지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지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별지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4년 12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축석루는 진주성 내, 남강에 면한 높은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다. 진주성은 예로부터 영남의 요지이며, 진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서 그 중심에 축석루가 있다. 진주성은 남쪽으로 강이 흘러 자연적인 해자가 되고 더욱이 강변은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요새로서 일찍부터 성이 있었던 터에 왜구를 막기 위하여 1437년(세종 19)에 성을 새롭게 수축하였다.

축석루는 진주성의 남쪽 장대의 역할을 겸하여 전시에는 장수의 지휘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남강을 굽어 내려다보는 절경에 자리하였기 때문에 사신의 접대처였으며,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명소였다. 과거를 치루는 고시장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진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축석루 주위는 담장이 둘러져 있고, 축석루 서측에는 논개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의기사가 별도의 일곽을 이룬다. 축석루 기단 전면에는 남강과 의암으로 통하는 계단을 시설하였다.

④ 역사 유래 및 특징

○ 역사 · 유래

축석루는 진주목사 김지대(金之岱)가 1241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1322년에 중수가 있었으며, 1380년(우왕 6)에 왜구에 의해 소실되었다. 그 후 1413년(태종 13)에 고을 원로들의 재건 제의로 용두사 승려 단영(端永)이 주관하여 중건을 진행하다 나라의 지원을 받아 진주판목사 권충(權衷)이 판관 박시결(朴時潔)과 중건을 완료하였다. 1491년에 중수했으며, 1583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이루어졌다.

1593년 6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로 인해 훼손되는 화를 입었으나 1595년 이순신이 축석루에 올랐다는 난중일기의 기록으로 보아 전소되지는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훼손된 채 방치되던 축석루는 1618년(광해군 10)에 병사 남이흥(南以興)이 대대적으로 복구했다. 이 때 남이흥은 김시민장군 사적비를 세

우고 북장대와 동장대를 중건하는 등 진주성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그 후 1724년, 1786년, 1810년, 1887년, 1908년의 중수기록이 남아있다.

축석루는 1948년 해방 후 국보로 승격되어 전면적인 중수가 이루어졌으나 1950년 한국전쟁 때 전소되었다. 1956년 진주고적보존회를 중심으로 복원이 추진되어 민관의 협조와 국가의 지원으로 1958년 공사를 착공, 1960년에 준공되었다.

1983년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로 지정하여, 사적 제11호 진주성과 함께 진주성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 특징

축석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의 장방형 누각건물이다. 기록에 의하면 축석루는 좌우에 부속 누각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서쪽에는 쌍청당(雙淸堂)과 임경헌(臨景軒), 동쪽에 함옥헌(涵玉軒)과 청심헌(淸心軒) 등 동서 익헌은 본루인 축석루의 기능을 보좌하며 미적으로는 축석루의 웅장함을 더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603년 목사 이수일이 진주성을 중축하면서 무너진 부속누각을 중건하였고, 1887년에 함옥헌을 중수하며 기록한 ‘함옥헌중수기’로 보아 이 때 까지 축석루와 함께 익헌이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축석루만 남아있다.

축석루는 본래 강쪽으로 경사진 지형에 맞추어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목재 누하주의 높이를 뒤로 가면서 낮게 조정하여 세우고 누마루를 구성했다. 누상의 출입은 단차를 이용하여 배면의 외별대 기단위에 설치한 세 개의 목재 계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 재건 시 경사진 지형을 평탄화하여 전후면의 단차를 없애고 장대석 기단을 설치한 후 가공한 화강석으로 초석과 누하주를 교체하였다. 이에 따라 배면의 출입계단도 단차만큼 화강석 계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시 목조계단을 올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변화되었다.

축석루의 하층은 내외진 모두 칸마다 빠짐없이 화강석 누하주를 세우고 기둥 상부에 귀틀을 결구하여 누마루를 꾸몄다. 상층은 평면상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내진과 전후 1칸의 외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구구조는 일반적인 2고주 7량가와는 달리 퇴보없이 전후 외진 평주를 가로질러 대량을 걸어 통칸처럼 가구를 구성했다. 따라서 내진주는 기둥머리에 보아지를 끼워 주두와 함께 대량을 받치고 있고, 외진주는 내진주보다 기둥높이를 낮추고 1출목 3익공 형식으로 포작을 구성하여 기둥 높이를 맞추며 장식성도 부여했다.

기둥 사이는 벽체와 창호없이 모두 개방하였고, 외진주 바깥으로 좁은 쪽마루와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재건된 축석루는 1920년대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자료와 비교해 볼 때 지형과 기단부, 초석과 누하주, 진입계단을 제외하고 가구구조와 목부재의 세부 수법 등은 소실전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지정가치 및 종합의견

○ 축석루는 밀양 영남루, 삼척 죽서루, 남원 광한루와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누각 중 하나이며,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대첩의 역사적 현장이다.

○ 초창과 중건, 중수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조선고적도보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소실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1960년대 재건된 현재의 축석루는 조선고적도보의 사진자료, 축석루재건설계도 및 기록물 등과 비교해 볼 때 가구구조와 공포 등 목부재의 세부수법은 소실전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했다고 사료된다.

○ 정확한 자료 및 고증에 의해 재건된 건물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논외로 한다고 하여도 재건된 축석루는 누각건축에서 중요한 부분을 상실하였다고 판단

된다. 지형이 변하고, 초석과 누하주의 교체는 축석루의 진정성과 건축적 가치를 부분적으로 훼손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축석루를 보물로 승격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축석루 좌우에는 부속건물들이 존재했었다. 밀양의 영남루와 남원의 광한루에서 볼 수 있듯이 본루 좌우의 부속건물 또는 익루는 방이 없는 본루의 기능을 보완하며 조형적으로 본루의 웅장함을 돋보이게 하고, 본루와 익루의 높고 낮은 지붕들은 하나가 되어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

중, 장기적으로 축석루 좌우 부속건물에 대해 충분한 고증과 발굴을 거쳐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7. 예천 야옹정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예천군 소재 「예천 야옹정」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예천군에 소재한 「예천 야옹정」을 보물로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경상북도지사
- (2) 대상문화재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230호 「예천 야옹정」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맞질길 55
 - 지정일 : 1987. 05. 13.
-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
 - 명 칭 : 예천 야옹정(醴泉 野翁亭)
 - 소유자(관리자) : ○○○(안동권씨복야공파맞질권씨)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맞질길 55
 - 조성연대 : 1566년(建築)
 - 지정면적 : 57.76㎡(보호구역 1,190㎡)
 - 양 식 : 목구조, 5량가, 정면4칸 측면4칸, 丁자형

라. 현지조사의견(2015.03.05.)

- 전)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 문화재위원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가치 있음.

마. 지정조사보고서 : 붙임 참조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가결 6명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5.03.05	대상문화재	예천 야옹정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전통건축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 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예천 야옹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별첨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별첨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별첨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4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1. 연 혁

송정년간(崇禎年間)에 작성된 「야옹정중수기」에 의하면(-- 嘉靖丙寅歲--我六世祖創之而扁之--) 1566년(명종21년) 6세손 권심언(權審言)이 창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문서내용과 동일한 가정 병인(嘉靖 丙寅)이 묵서된 숫막새가 전면처마에 보존되고 있다.

2. 중창, 중수 내력

배면 퇴칸 도리 받침장여에 기록된 문서<後之人重勑時 觀上樑 ---- 擁正辛未三月二十六日時--->에 의하면 1731년(영조7년)에 큰 규모의 중수공사가 있는 듯하고, 궁제 권상대가 작성한 1924년 중수기, <野翁亭稷文簿>에 1957, 1960년 보수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경상북도문화재로 지정된 후 보수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현황 및 특징

○ 배치 ;

작약봉 산자락에 남동향으로 자리하고 주변에 경사에 따라 층단한식토장을 돌리고 전면 좌측에 사각문을 두어 정자로 출입케 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자건물은 풍광이 좋은 곳에 자리하는 것이 상례이나 야옹정은 마을내 위치하여 정이 자리하는 장소성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권만추가 작성한 중수기와 <퇴암옥산유고>에 의하면 정자 전면에 용계가 흘렀고 멀리 한천이 휘돌고 바닥엔 흰돌이 깔려있었고 정자 전면에 두 개울이 합수되어 흘렀다고 기술하고 있어 당시의 주변경관과 현재의 모습은 상당한 변화가 있는 걸로 추정된다.

○ 평면 ;

정면 4칸, 우측면 4칸, 좌측면 2칸 규모의 T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 6칸 대청을 중심으로 전, 후 퇴칸을 두고 우측으로 누마루 1칸, 온돌방 3칸을 남북으로 두어 T자형 평면이 만들어졌다. 6칸대청은 전, 후 측면 삼면에 창호가 시설된 폐쇄형 마루방으로 전면에 매칸 2분합들문을 설치하여 전면으로의 개방성을 높였으며 배면과 좌측면은 매칸 두짝영쌍창을 두었다. 그리고 우측에 독립된 누마루 한칸을 돌출시켜 위치시키고 누마루으로의 출입은 전

면 퇴칸과 뒤편 온돌방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1칸 누마루는 대청과 달리 온돌방에 연결되는 독립된 폐쇄형 마루방으로 보인다. 대청과 연결된 온돌방은 2칸으로 구획되어있고 4칸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뒤편 온돌방은 배면 퇴칸과 온돌방 뒤편 문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러한 평면구성은 야옹정의 용도와 다소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24년 중수기에 의하면 堂부분(마루부분)은 여름(涼)에, 室부분(온돌방)은 겨울(溫)로 표현하고 있어 계절에 따른 이용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동네 대소사 모임처, 접객, 서당 용도 등 다용도기능을 지니고 있어 이에 따른 편리성을 갖춘 평면으로 추측된다.

○ 구조 ;

경사진 대지에 기반을 조성하여 전면은 중층형이고 측면과 배면은 단층형으로 건립되었다. 대청부분은 전후 외목도리가 설치된 5량구조이다. 그리고 배면부분에 각주를 세우고 도리와 장혀, 퇴량을 걸쳐 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는 아마 1731년 중수시 첨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출목을 둔 5량 익공형식이며 3분변작에 가깝게 거절하여 파련대공을 세웠다. 대량과 종량은 직재에 가깝게 치목하였고 대량위에 보아지형으로 치목된 양봉을 얹어 종량을 받게 하였다. 주간 사이는 화반을 1구씩 삼입하였는데 삼면의 모양이 각각이다. 전면은 당초문과 연화로 투각하고 상부에 3개의 소로를 얹은 투각화반형이고 좌측면은 3개의 소로를 얹은 장방형이나 하부만 투각하였다. 그러나 배면은 가운데 소로 일구만 얹은 장방형화반이다. 팔작지붕 건축에서 양측면에 층량이 설치되는데 여기서는 좌측부에 층량을 설치하고 외기반자를 얹은 것은 일반적 수법으로 볼 수 있으나 우측부의 층량 설치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우측부는 3량구조 박공지붕으로 전체적으로는 丁자형지붕형이다. 특히 대청부분만 겹처마로 처리하고 우측부는 홑처마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활주는 대청부분에 2본, 온돌방 배면부에 2본을 설치하였는데 서측 추녀하부 활주는 사각형 방형각재에 하부에 연꽃문양을 새겨두었다. 추녀 하부에 활주를 세우기 위한 원형홈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어 보수시 지붕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처마부분은 정면만 고식인 통평고대가 설치되었고 측면과 배면은 연합과 평고대가 별설되어있다.

창호는 온연귀수법의 문틀결구수법과 배면과 측면창호는 가운데 설주를 세운 영쌍창의 다소 오래된 수법 등을 보이고 있으며, 부재에 과거 단청을 치채한 흔적이 남아 있어 과거에는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 공포 ;

야옹정의 공포양식은 외1출목 이익공형식이라 볼 수 있다. 익공의 구성방식을 살펴보면 정면과 측면의 초익공형태는 양서형으로 살미단이 짧고 날카로워 초기적 모습을 취하고 있고 이익공은 살미단을 두지 않고 운궁형과 유사하게 단부를 궁글려 외목도리를 감싸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배면은 정, 측면과는 달리 평주상부 익공은 이익공형식은 취하고 있으나 초익공은 살미단을 두지 않고 궁글리기만하였고 이익공은 단부를 삼분두로 처리하여 정, 측면과는 상이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면과 측면 출목침차를 따로 두지 않고 출목침차설치부분에만 장여 단면을 키워 조각하여 침차를 대신하였고, 배면은 통장혀가 아닌 단장혀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익공구성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누마루부분은 주두위에 대량머리를 얹고 창방머리를 살미모양으로 처리하여 일반적 초익공양식과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4. 조사자 의견

야옹정의 중수기에 기록된 내용과 숫막새의 명문이 일치되는 것으로 볼 때 16세기에 건립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러 차례 중수된 기록이 있으나 상부구조양식 및 익공형식, 창호구성수법 등에서 건립초기의 수법이 잘 보존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야옹정과 유사한 평면형식과 구조양식을 지닌 안동 소호현(보물 제475호), 의성 만취당(보물 제1825호), 안동 후조당(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문화재로 지정·보존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야옹정도 상기한 다른 문화재와 비교해 볼 때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지정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5.03.05	대상문화재	예천 야옹정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예천 야옹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야옹(野翁) 권의(權穰: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로 안동권씨 동성마을인 작은맛길에 자리 잡고 있다. 우측에는 춘우재고택, 연곡고택이 있다.<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권심언(權審言)이 선고인 야옹 권의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이다.<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566년에 건립된 정자로, 평면이나 가구수법, 창호 등에서 건립년대와 부합되는 건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야옹정 사주문을 포함한 일괄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경상북도에서 마련한 기준안을 기초로 하여 500M로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임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1566년에 건립된 정자로, 평면이나 가구수법 등에서 건립년대와 부합되는 건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물로서의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4월 15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③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야옹정은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곡리는 예천읍에서 북쪽으로 8-9km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동쪽은 내(川)를 사이에 두고 대제리와 이웃하고 있고, 서로는 능천리, 남으로는 예천읍 생천리, 북으로는 하리면 율곡리·부초리와 이웃한다.

○ 제곡리의 형세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북동쪽에는 부용봉이, 서쪽에는 성백산이, 북쪽에는 후산이 험하게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옥산이 새가 날아오르는 형세를 하고 있다. 전면의 넓은 들 가운데에는 용계(지금의 한천)가 흐르고 있는데, 중수기에는 정자 바로 아래로 용계가 흘렀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경관은 지금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 조선시대에는 제곡리를 저곡면이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소저동과 백학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용문면 저곡리로 되었고 1988년에 제곡리로 개칭되었다.

○ 제곡리는 작은맛질이라고도 불리는데, 자연마을로는 맛질, 노인촌, 양갓이 있다. 맛질은 마을 근처 산과 들에 마가 많아 마를 캐는 길목이라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으며, 노인촌은 작은맛질 북쪽에 노인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갓은 뒷산 팔여봉에서 내려다보면 길이 탕건처럼 생겼는데, 길 때문에 나뉘진 마을이 두 개의 갓과 같다고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다.

○ 제곡리는 안동권씨 북야공파 20세 야옹(野翁) 권의(權儀:1475-1558)가 안동도촌에서 입향한 이래 500년간 세거하고 있는 안동권씨 동성마을이며, 야옹정 주위에는 춘우재고택(경북 민속자료 제102호), 연곡고택(경북 민속자료 제103호), 옥산정, 송동재사 등이 있다.

④ 연혁 유래 및 특징

○ 야옹정은 1566년(명종21)에 권심언(權審言)이 선고(先考)인 야옹(野翁) 권의(權儀: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이다. 제곡리는 권의가 관직생활을 접고 향리에 은거하면서 후진을 양성하던 곳인데, 호를 야옹이라 한 것은 강호에서 나라를 근심하고 발두둑에서 삶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도연명처럼 자연 속에서 은둔하고자 했던 데서 그 뜻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 야옹정에는 중수기 2개가 남아 있다. 첫번째 중수기는 후손인 권만추(權萬樞)가 지은 것인데,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라고만 표기되어 있어 중수기의 작성 연대는 숭정년간인 1628년에서 1644년 사이로 추정된다.

중수기에 의하면 야옹정은 건립 당시 모두 14칸 규모였고, 도리 양쪽에 굽은 난간과 높은 현함을 갖추었으며 단청이 칠해져 있었다고 한다. 정자는 가을에 수리했는데 서까래 교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밖에 오래되어 좀 먹은 현판과 시판도 함께 바꾸었다. 문중 어른들께 여쭙어 글씨를 고치고, 장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새기게 하여 벽에 걸어두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중수기는 1924년에 공제(兢齊) 권상대(權相大)가 작성한 것인데, 중수기에는 야옹정의 중수가 여러 번 이루어졌으나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였고, 1924년에 후손들이 야옹정을 수리하자는 논의를 한 이유는 서까래가 틀어지고 지붕에 물이 새었기 때문에 기술자를 부르고 재목을 마련하여 한 달 만에 정자 수리를 마쳤다고 하였다. 정자는 모두 수십칸인데 왼쪽은 방이고 오른쪽은 마루로 서늘함과 따뜻함을 모두 갖추었고, 정자 근처의 숲은 4계절의 경치를 느낄 수 있으며, 주위의 작은 연못, 오래된 느티나무, 소나무 및 대나무는 정자를 더욱 운치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⑤ 지정가치 및 근거 기준

○ 야옹정은 1566년에 건립된 건물로서 안동권씨 문중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 야옹정은 정면 4칸 측면 4칸 규모의 丁자형 건물인데, 주위에는 방형의 토석 담장을 둘렀으며 전면 담장 좌측에는 사주문을 세워 정자로 출입케 하였다.

○ 평면은 좌측 3칸을 대청으로 꾸미고 우측에는 온돌방을 연접시켰는데, 우측칸의 전면에는 누마루 1칸을, 배면에는 온돌방 1칸을 각각 돌출시켜 전체적으로 丁자형의 평면을 이루게 하였다. 정자의 전면과 배면에는 반 칸 규모의 퇴칸을 두었는데, 전면 퇴칸의 하부에는 누하주 6분을 세워 전면의 퇴칸은 누마루를 이루게 하였다.

- 배면의 퇴칸은 중수시에 후설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치시기가 승정년간(崇禎年間)이고 기법도 기존 건물과 어색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기둥 상부의 포작은 일출목한 주심포계열로 조선 초기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주상부의 귀포는 귀한대를 구성하여 추녀를 받도록 하였고, 포간에는 깊게 초각한 화반을 놓아 처마 밑을 짜임새 있게 장식했다.
- 대량 상부는 단순히 동자주나 동자대공으로 마감하지 않고 종보 밑에 포부재를 놓아 받도록 했고, 대공 또한 초각하여 고식의 모습을 하고 있다.
- 야옹정에는 단청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누정건축에서 단청을 한 것은 보기 드문 예로 추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대청 배면과 좌우측, 우측칸 전면의 창호는 가운데 설주가 세워진 고식의 영쌍창으로, 정자의 건립년대를 가늠케 해주고 있다.

【종합의견】

- 야옹정은 1566년(명종21)에 권심언(權審言)이 선고(先考)인 야옹(野翁) 권의(權穰: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이다.
- 평면은 전체적으로 丁자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는데, 배면의 퇴칸은 중수시인 승정년간(崇禎年間)에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 건물과 어색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 건물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야옹정에는 단청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데, 누정건축에서 단청을 한 것은 보기 드문 예이다.
- 야옹정은 1566년에 건립된 정자로서 포작과 대공의 형상, 가구, 창호 등이 건립년대와 부합되는 고식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어 보물로 지정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15.03.05	대상문화재	예천 야옹정
조 사 자	성 명	○ ○ ○	전공 분야 한국 건축사
	소 속	○○대학교	직위(직책) 교수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 문화재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② 문화재 명칭	예천 야옹정	
	③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 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보호물>			
<보호구역>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⑧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p>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 년 3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자: ○ ○ ○ (서명 또는 인)</p> <p>문화재청장 귀하</p>			

1. 문화재명 : 예천 야옹정(野翁亭)

2.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맞질길 55

3. 창건과 변천

야옹정은 예천 제곡리 안동권씨 세거지에 위치하고 있다. 정자 뒤에는 낮지만 부드러운 부용봉(芙蓉峯)이 있고 앞으로는 넓은 들이 있으며 들 너머에는 낙동강과 합류하는 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다.

야옹정은 1566년 권심언(權審言)이 선조인 야옹(野翁) 권의(權儀, 1475-1558)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은 정자이며 그 호를 따서 야옹정이라고 했다. 지붕 암막새 중에는 가정(嘉靖) 병인(丙寅)이라고 제작 년대가 새겨진 기와가 몇 남아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가정 병인년은 1566년으로 정자가 초창되었을 때 사용했던 기와이다. 막새를 통해 야옹정의 건립연대가 임진왜란 이전인 1566년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림1. 가정(嘉靖) 연호가 새겨진 암막새 : 초창 때인 1566년에 제작된 기와로 문양으로 미루어 수막새도 초창 때 것으로 짐작된다.



그림2. 가정(嘉靖) 연호가 새겨진 암막새를 뒤집어 망자로 사용하였다 : 연화로 추정은 되지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문양은 아니다.

야옹정에는 중수기 2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연호가 승정기원후(1628-1644년 사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세기 초에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수기는 후손 권만추가 지었다. 이에 따르면 야옹정은 1566년에 건립되었으며 모두 14칸 규모였으며 단청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과 비교하면 뒷마루까지를 계산하면 거의 규모가 일치하며 단청도 건물 내부에는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때의 수리는 서까래 교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다음에는 1924년 궁제 권상대가 작성한 중수기가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야

옹정은 그 사이에 여러 번 중수가 있었으나 수리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 1924년에는 비가 새고 서까래가 틀어져 수리하였다. 이때도 전면 해체수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57년과 1960년에도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리한 기록이 있으나 수리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대적인 수리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에는 예천군의 지원으로 수리가 있었는데 지붕변와 및 드잡이, 온돌방, 기단, 주변 배수로, 담장을 수리하였다. 누하의 기단이 이 때 새로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초석이 문힐 정도로 하단 기단 바닥이 올라온 것도 이때라고 추정된다. 초창 때의 기와 및 단청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초창 후 큰 변화와 부재교체 없이 현재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건축구조 및 양식

야옹정은 부속건물 없이 크지 않은 담장 안에 배치되었으며 사주문 형식의 작은 대문을 통해 출입한다. 야옹정 평면은 ‘ㄱ’자 형으로 서쪽에 양통으로 대청을 6칸 두고 동쪽에 남북방향 한 줄로 뒤에서부터 방 3칸과 누마루 한 칸을 두었다. 북쪽의 방 한 칸은 북쪽 뒷마루에서 출입하며 독립성을 갖는다. 전면의 누마루 한 칸은 방과 전면 뒷마루 양쪽에서 출입이 가능한 개방적인 공간이지만 사방에 벽체를 들어서 시각적으로는 폐쇄적으로 처리했다. 동선은 개방적이지만 시각적으로는 폐쇄적으로 계획했다. 대청마루 전면에도 모두 세 살문을 달아 막았으며 뒷문은 널문을 달았다. 뒤쪽 뒷마루는 처마 밑으로 마루 끝단에 기둥을 세우고 보와 도리를 걸로 가되처럼 꾸몄으나 벽체와 천장은 없다. 가구만 올려놓기처럼 만든 것이 특징적이다.

전면은 지형의 단차를 이용해 누하주를 세웠기 때문에 정면에서 볼 때는 누각형 정자와 같은 느낌을 준다. 누하주는 전면 쪽마루 끝에 세웠고 누상주는 반칸을 들여 별도로 세운 것도 누각형 건물에서는 보기 어려운 단면계획이다. 기둥은 모두 원기둥이며 기둥 위에는 주두를 놓고 익공과 익공을 십자로 결구하여 공포를 만들었다. 공포는 출목이 있는 초익공형식이다. 익공의 형태는 짧고 강직한 조선초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익공 위에는 소로가 있고 소로 위에는 장혀와 운공이 십자로 결구되었다. 장혀는 통장혀인데 공포가 있는 구간에서는 하단에 조각형 단장혀를 남기고 양쪽을 건어내 마치 출목 첨차와 같이 보이도록 했다. 즉 장혀와 출목첨차가 하나의 부재를 깎아 만든 형상이다. 도리는 굴도리이며 지붕은 겹처마이다. 평고대는 착고판과 한 몸을 이하는 구로대를 사용하였다. 구

로대는 봉정사 극락전에도 있는 고식 기법으로 야옹정이 공포와 기법에서 고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화방은 연화형인데 투각하거나 고부조로 하여 입체감을 살렸는데 그 기법이 세련되고 아름답다. 지붕은 팔작지붕이고 누마루 빠진 곳은 맞배로 했으며 기와지붕이다.



그림3. 야옹정 전경 : 6칸 대청과 남북 4칸의 방과 누마루의 구성



그림4. 야옹정 공포 : 3포 초익공형식으로 익공의 모습이 짧고 강직한 고식, 단청 흔적도 남음



그림5. 구로대 사용 : 평고대와 착고판이 한 부재로 이루어진 고식 기법



그림6. 대들보 위 동자주 익공 : 단청이 선명하게 남아 있음



그림7. 눈썹천장 : 천장 개반에는 연화 단청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



그림8. 화반 : 연화형 화반으로 투각한 조각기법 등이 고식이며 아름답음

출목이 일반 건물에 비해 많이 빠져 나오고 출목도리에 하중이 걸려 공포가 바깥쪽으로 처진 것이 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연의 배견이도 현격하고 말구 경사도 1/10이 넘는 고식 기법임을 알 수 있다.

5. 지정가치

- 야옹정은 임진왜란 전인 1566년에 건축되었으며 초창 때의 모습이 거의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고 초창 때의 막새기와와 단청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임진왜란 이전 건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임진왜란 이전 건물이 극히 적은 현실로 볼 때 양호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야옹정이야말로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 3포 초익공의 공포는 주삼포 형식과도 유사하며 익공의 형식이 조선전기의 짧고 강직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출목을 보통 건물보다 많이 낸 것도 조선 전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출목 첨차를 장혀와 한 몸으로 만든 것은 고식이면서도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야옹정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평고대와 착고막이를 하나의 부재로 만든 구로대의 사용은 봉정사 극락전 등에서 볼 수 있는 고식기법으로 야옹정의 가치를 더해주는 상세라고 할 수 있으며 부연의 배견이가 현격하고 말구 치가 경사가 센 것도 시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야옹정은 몇 안 되는 임진왜란 이전 건물이라는 것 하나로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며 이를 증거할 수 있는 건축 양식과 기법, 막새, 단청 등이 잘 남아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8.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정밀안전진단 결과 검토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보물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에 대하여 2015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에 대하여 2015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81길 176-64
- 지정일 : 1965. 09. 01.

(2) 용역개요

- 용역명 :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정밀안전진단
- 용역기간 : 2015. 06. 09. ~ 2016. 01. 04.
- 안전진단 범위
 - 관련문헌 조사 및 분석
 - 지반환경물리탐사(탄성파탐사, 전기 비저항탐사, GPR탐사) 및 불상의 변위 변형 조사
 - 암석의 풍화 및 손상현황 조사
 - 변위·변형조사(3D laser scanner)
 - 보수방안 제시

(3) 용역 결과

○ 불상 및 지반구조안정성에 문제 없음

- 오랜 시간 안정화된 지반이 현황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형요인(터널 개설, 산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함
- 지속적 주의관찰(계측 등) 및 우수침투 방지 등 적극적인 관리유지 필요

라. 검토의견

○ 지속적 모니터링 등 시행 및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보고사항】

안건번호 건축 2016-04-019

1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북 칠곡군 소재 보물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주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관정 설치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 17건에 대하여 자체검토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소 계		17건	허가 10건 변경허가 3건 조건부허가 4건	
칠곡 기성리 삼층석탑	경북 칠곡 (○○○)	<input type="checkbox"/>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관정 설치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37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100m가량 이격) ○ 사업내용 - 석축설치 : H=2.3m, L=17.5m, H=0~2.2m, L=8.5m - 비닐하우스 설치 : 9m×7m×4.5m - 관정 설치 : D150mm, L=100m	허가	'16.04.18
칠곡 송림사 오층전탑	경북 칠곡 (송림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송림사 담장 부분 보수 ○ 위치 : 칠곡군 동명면 송림길 73 *제1구역(문화재로부터 50m가량 이격) ○ 사업내용 - 담장보수 H=1.5m, L=38.8m - 배수로 설치 L=33.2m	허가	'16.04.1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함양 (해광종합건설(주))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부지조성 ○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23-5 *제2구역(문화재에서 215m가량 이격) - 관련법에 따름 ○ 사업내용 - 옹벽 설치 : H=1.97m, L=10.379m H=3.8m, L=26.9m	허 가	'16.04.18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경남 함양 (○○○)	<input type="checkbox"/> 다가구주택 신축 부지조성 ○ 위치 :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300-1, 299-123 *제2구역(문화재에서 130m가량 이격) ○ 사업내용 : 2단 석축쌓기 - 절토 : H=1.6m~6.78m - 1단석축 : H=0~4.8m, L=21.6m - 2단석축 : H=0~4.6m, L=14.8m - L형 옹벽 : H=4.8m, L=4m	허 가	'16.04.18
홍성 신경리 마애여래입상	충남 홍성 (홍성군수)	<input type="checkbox"/> 등산로 안전난간 설치 ○ 위치 :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산81-1 *제1, 2구역(보호구역에서 30m가량 이격) ○ 사업내용 : 등산로 안전난간 설치 66m - 재료 : 구조용 탄소강관(밤색 도색)	허 가	'16.04.18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충북 괴산 (영산신씨충 익공종손파 문중)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개축 ○ 위치 :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153-1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8m 이격) ○ 기존건축물(철거) : 주택 97.10㎡ - 건축면적(연면적) : 94.50㎡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층수 및 높이 : 1층, 5.32m	허 가	'16.04.1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	경기 안성 (칠장사 주지)	<input type="checkbox"/> 진입도로 포장 ○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일원 *보호구역 내 ○ 총사업면적 : 287㎡ - 1구간 : 황토콘포장(60㎡), 자연석석축쌓기(H:0~약2m) - 2구간 : 마사토다짐(42㎡) - 3구간 : 황토콘포장(12㎡) - 4구간 : 기존토사다짐(84㎡) - 5구간 : 황토콘포장(48㎡) - 6구간 : 기존토사다짐(41㎡) ○ 기타사업 - 자연석석축 해체 후 화강석 장대석 쌓기 (H=1.34m, L=5.6m) - 법면 자연석석축 쌓기(L=8m)	허가	'16.04.18
장수향교 대성전	전북 장수 (○○○ 외 1인)	<input type="checkbox"/>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14-12 외 1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114m 이격) ○ 건축면적(연면적) : 174.14㎡(266.51㎡) ○ 건축구조 : 일반철골조 ○ 층수 및 높이 : 2층, 8.85m	허가	'16.04.18
여수 진남관	전남 여수 (학교법인 운강학원)	<input type="checkbox"/> 교육연구시설(급식실) 증축 ○ 위치 : 여수시 동산동 550 일원 *제2구역(보호구역에서 110m 이격) ○ 건축면적(연면적) : 537.18㎡(980.04㎡)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증축부 층수 및 높이 : 2층, 11.03m	허가	'16.04.18
구례 연곡사 동 승탑	전남 구례 (구례군수)	<input type="checkbox"/> 진입도로 포장 ○ 위치 :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1013 일원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24m 이격) ○ 총사업면적 : 882.0㎡ ○ 콘크리트 포장 - L=183.6m, B=4m, T=20cm	허가	'16.04.1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양산 통도사 대웅전 및 금강계단	경남 양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광선원 신축(허가사항 2차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 *제1구역(보호구역에서 450m 이격) ○ 사업내용 : 보광선원(불교문화교육관)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관 291.6㎡, 체험관A 195.3㎡, 체험관B 195.3㎡, 연구동 176.76㎡, 세면장 지하 103.68㎡, 지상1층 155.52㎡, 대문채 15.21㎡ ○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이동 : 7m - 석축설치 : H=1m~4.2m, L=127m <li style="padding-left: 40px;">H=1m~2m, L=31m <li style="padding-left: 40px;">H=3m~5.4m, L=51m 	변경허가	'16.04.18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충북 영동 ((주)에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건립(허가사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영동군 용산면 용산리 123 일원 *제1,3구역(보호구역에서 367m 이격) ○ 대지면적 : 17,372㎡ ○ 건축면적(연면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462.43㎡(4,638.48㎡) → 3,127.12㎡(4,172.86㎡) ○ 동수 : 4동 ○ 층수 /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동: 2층 / 11.95m → 16.05m - B동: 2층 / 11.325m - C동: 3층 / 11.655m - D동: 1층 / 4.35m ○ 그 외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동 평면 형태 변경 	변경허가	'16.04.18

문화재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거창 상림리 석조보살입상	경남 거창 (○○○)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신축(2차)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83-6 *제2구역(문화재에서 210m가량 이격)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건축면적(연면적) : 103.63㎡(143.28㎡)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높이 : 7.75m	조건부허가 (매장문화재 법에 따른 절차 이행)	'16.04.18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6명 / 원안접수 6명